

엘리프 세종 입주자모집공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엘리프세종.com>)**으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기간 및 분양계약체결에 따른 당첨자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날짜 및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쓸리현상 방지를 위해 일차별 접수 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 가능인원 - 서류접수 :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 최대 2인** (위임시 대리인 1인 외 동반 1인 최대 2인 입장 가능)
 - 단,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따른 2인이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가능하며, 조건 미충족시 동반방문 불가(1인만 방문 가능)
 - 계약체결 :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 최대 2인** (위임시 대리인 1인 외 동반 1인 최대 2인 입장 가능)
 - 단,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따른 2인이 모두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가능하며, 조건 미충족시 동반방문 불가(1인만 방문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①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②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③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044-865-0667)를 운영 중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4.**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에는 본 아파트의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지역(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미성년자(세대주 및 청약신청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대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엘리프세종.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의 100% 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다만, 그 기간이 지나기전에 해당주택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때 그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 제 64조 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 101조에 의거 처벌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으로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합니다.
 -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계약체결
일 정	2022년 1월 3일(월)	2022년 1월 4일(화)	2022년 1월 5일(수)	2022년 01월 11일(화)	2022년 01월 12일(수) ~ 01월 19일(수)	2022년 01월 24일(월) ~ 01월 28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제출 및 계약 (10:00 ~ 17:00) ※ 상기 기간은 당첨자만 해당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장 소	■ 견본주택(10:00 ~ 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전방문 예약기간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엘리프세종.com) 2022.01.11.(화) ~ 2022.01.19.(수)	홈페이지 (http://엘리프세종.com) 2021.01.21.(금) ~ 2021.01.28.(금)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37066호(2021.12.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2개동 총 6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76세대 (기관추천 58세대, 다자녀가구 66세대, 신혼부부 116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1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985	01	059.9901A	59A	59.9901	19.9390	79.9291	47.4082	127.3373	35.3888	187	20	20	38	6	38	122	65	13
		02	059.9901B	59B	59.9901	19.9390	79.9291	47.4082	127.3373	35.3888	2	-	-	-	-	-	-	2	-
		03	059.9901C	59C	59.9901	19.9390	79.9291	47.4082	127.3373	35.3888	2	-	-	-	-	-	-	2	-
		04	084.9976A	84A	84.9976	26.5567	111.5543	67.1709	178.7252	50.1410	121	12	12	24	4	24	76	45	11
		05	084.9081B	84B	84.9081	27.8363	112.7444	67.1002	179.8446	50.0882	82	8	8	17	3	17	53	29	2
		06	084.9846C	84C	84.9846	28.4667	113.4513	67.1606	180.6119	50.1334	81	8	8	16	2	16	50	31	1
		07	084.9737D	84D	84.9737	27.1692	112.1429	67.1519	179.2948	50.1269	94	10	10	19	3	19	61	33	2
		08	084.9224E	84E	84.9224	26.8465	111.7689	67.1114	178.8803	50.0967	7	-	-	1	-	1	2	5	1
		09	084.9849F	84F	84.9849	27.5645	112.5494	67.1607	179.7101	50.1335	4	-	-	1	-	1	2	2	-
		10	104.8737A	104A	104.8737	33.4772	138.3509	82.8782	221.2291	61.8662	78	-	8	-	2	-	10	68	3
		11	159.8365A	159A	159.8365	52.5832	212.4197	126.3137	338.7334	94.2894	1	-	-	-	-	-	-	1	-
		12	159.8365B	159B	159.8365	52.5832	212.4197	126.3137	338.7334	94.2894	1	-	-	-	-	-	-	1	-
합 계											660	58	66	116	20	116	376	284	33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비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비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비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2022.04.20.	2022.09.20.	2023.02.20.	2023.07.20.	2023.12.20.	2024.04.22.	입주지정기간	
									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59A	187	101동 1, 3, 4, 5, 6호 102동 1, 2, 3, 4호 (401, 601호 제외) 103동 1, 3, 4호 (401, 601호 제외) 104동 1, 3, 4, 5호 108동 1, 2호 109동 1, 2호	1층	13	50,091,219	189,528,781	-	239,620,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23,962,000	71,886,000
			2층	18	50,091,219	194,798,781	-	244,890,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24,489,000	73,467,000
			3~4층	38	50,091,219	200,068,781	-	250,160,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75,048,000
			5~9층	83	50,091,219	207,968,781	-	258,060,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77,418,000
			10층 이상	35	50,091,219	213,228,781	-	263,320,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26,332,000	78,996,000
59B	2	102, 103동 601호	6층	2	50,091,219	207,968,781	-	258,060,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25,806,000	77,418,000	
59C	2	102, 103동 401호	4층	2	50,091,219	200,068,781	-	250,160,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25,016,000	75,048,000	
84A	121	101, 103, 104동 2호 108동 3호 109동 3, 4, 5호 110동 1, 2, 3, 4호 111동 2, 3호	1층	11	70,972,279	263,467,721	-	334,440,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33,444,000	100,332,000
			2층	13	70,972,279	270,817,721	-	341,790,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34,179,000	102,537,000
			3~4층	26	70,972,279	278,167,721	-	349,140,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34,914,000	104,742,000
			5~9층	57	70,972,279	289,187,721	-	360,160,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36,016,000	108,048,000
			10층 이상	14	70,972,279	296,537,721	-	367,510,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36,751,000	110,253,000
84B	82	105, 106, 112동 2호	1층	2	70,897,543	263,722,457	-	334,620,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33,462,000	100,386,000
			2층	3	70,897,543	271,082,457	-	341,980,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34,198,000	102,594,000
			3~4층	6	70,897,543	278,432,457	-	349,330,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34,933,000	104,799,000
			5~9층	15	70,897,543	289,472,457	-	360,370,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36,037,000	108,111,000
			10층 이상	56	70,897,543	296,822,457	-	367,720,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36,772,000	110,316,000
84C	81	105, 106, 112동 3호	1층	1	70,961,522	265,758,478	-	336,720,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33,672,000	101,016,000
			2층	3	70,961,522	273,158,478	-	344,120,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34,412,000	103,236,000
			3~4층	6	70,961,522	280,558,478	-	351,520,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35,152,000	105,456,000
			5~9층	15	70,961,522	291,668,478	-	362,630,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36,263,000	108,789,000
			10층 이상	56	70,961,522	299,068,478	-	370,030,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37,003,000	111,009,000
84D	94	104동 6호 107동 1, 2, 3호 109동 6호 111동 1, 4호	1층	2	70,952,321	265,247,679	-	336,20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33,620,000	100,860,000
			2층	7	70,952,321	272,637,679	-	343,590,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34,359,000	103,077,000
			3~4층	14	70,952,321	280,027,679	-	350,980,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35,098,000	105,294,000
			5~9층	34	70,952,321	291,107,679	-	362,060,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36,206,000	108,618,000
			10층 이상	37	70,952,321	298,497,679	-	369,450,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36,945,000	110,835,000
84E	7	108동 4호	1층	1	70,909,574	264,170,426	-	335,080,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33,508,000	100,524,000
			2층	1	70,909,574	271,530,426	-	342,440,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34,244,000	102,732,000
			3~4층	2	70,909,574	278,900,426	-	349,810,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34,981,000	104,943,000
			5~7층	3	70,909,574	289,950,426	-	360,860,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36,086,000	108,258,000

84F	4	111동 2호	14~17층	4	70,961,663	299,828,337	-	370,790,000	37,079,000	37,079,000	37,079,000	37,079,000	37,079,000	37,079,000	37,079,000	111,237,000
104A	78	105, 106, 112동 1호	1층	3	87,568,760	297,455,673	29,745,567	414,770,000	41,477,000	41,477,000	41,477,000	41,477,000	41,477,000	41,477,000	41,477,000	124,431,000
			2층	3	87,568,760	305,746,582	30,574,658	423,890,000	42,389,000	42,389,000	42,389,000	42,389,000	42,389,000	42,389,000	42,389,000	127,167,000
			3~4층	6	87,568,760	314,037,491	31,403,749	433,010,000	43,301,000	43,301,000	43,301,000	43,301,000	43,301,000	43,301,000	43,301,000	129,903,000
			5~9층	15	87,568,760	326,464,764	32,646,476	446,680,000	44,668,000	44,668,000	44,668,000	44,668,000	44,668,000	44,668,000	44,668,000	134,004,000
			10층 이상	51	87,568,760	334,755,673	33,475,567	455,80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45,580,000	136,740,000
159A	1	112동 2401호	24층	1	133,462,308	547,034,265	54,703,427	735,20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220,560,000	
159B	1	112동 2601호	26층	1	133,462,308	547,034,265	54,703,427	735,20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73,520,000	220,560,000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세종특별자치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공사 비용 및 이상옵션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경계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m²,세대)

구 분		59A	59B	59C	84A	84B	84C	84D	84E	84F	104A	159A	159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3	-	-	3	2	2	2	-	-				12
	국가유공자	3	-	-	3	2	2	2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	-	1	1	1	1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	-	1	1	1	1	-	-				7
	중소기업 근로자	3	-	-	2	1	1	1	-	-				8
	북한이탈주민	1	-	-	-	-	-	1	-	-				2
	우수선수	1	-	-	-	-	-	1	-	-				2
	입주기업종사자	3	-	-	2	1	1	1	-	-				8
	소계	20	-	-	12	8	8	10	-	-	-	-	-	58
다자녀 특별공급		20	-	-	12	8	8	10	-	-	8	-	-	66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50%)	19	-	-	12	8	8	9	1	1				58
	일반공급(20%)	8	-	-	5	3	3	4	-	-				23
	추첨제(30%)	11	-	-	7	6	5	6	-	-				35
	소계	38	-	-	24	17	16	19	1	1				11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	-	4	3	2	3	-	-	2	-	-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50%)	19	-	-	12	8	8	9	1	1				58
	일반공급(20%)	8	-	-	5	3	3	4	-	-				23
	추첨제(30%)	11	-	-	7	6	5	6	-	-				35
	소계	38	-	-	24	17	16	19	1	1				116
합 계		122	-	-	76	53	50	61	2	2	10	-	-	37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불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6 1177 2130 1390"> <thead> <tr> <th data-bbox="286 1177 757 1241">구 분</th> <th data-bbox="757 1177 1227 1241">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data-bbox="1227 1177 1697 1241">그 밖의 광역시</th> <th data-bbox="1697 1177 2130 1241">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6 1241 757 1278">전용면적 85㎡ 이하</td> <td data-bbox="757 1241 1227 1278">300만원</td> <td data-bbox="1227 1241 1697 1278">250만원</td> <td data-bbox="1697 1241 2130 1278">2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278 757 1315">전용면적 102㎡ 이하</td> <td data-bbox="757 1278 1227 1315">600만원</td> <td data-bbox="1227 1278 1697 1315">400만원</td> <td data-bbox="1697 1278 2130 1315">3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15 757 1351">전용면적 135㎡ 이하</td> <td data-bbox="757 1315 1227 1351">1,000만원</td> <td data-bbox="1227 1315 1697 1351">700만원</td> <td data-bbox="1697 1315 2130 1351">400만원</td> </tr> <tr> <td data-bbox="286 1351 757 1390">모든면적</td> <td data-bbox="757 1351 1227 1390">1,500만원</td> <td data-bbox="1227 1351 1697 1390">1,000만원</td> <td data-bbox="1697 1351 2130 1390">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0:00~14:00시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1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8세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한 경우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관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세종시청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대전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충남도청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국가유공자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기업종사자	세종시청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6세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 당첨자 선정기준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한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p>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6세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신혼부부 특별공급</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p> <p>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p> <p>※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p> <p>※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p> <p>※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p> <p>※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p> <p>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③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p> <p>④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p> <p>※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p> <p>•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p> <p>•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p>	<p>■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p> <p>•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0%를 소득 기준 대상자에게 잔여물량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p> <p>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p> <p>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p> <p>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p> <p>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p> <p>* 예시) 혼인신고 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모집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순위 청약 기회 부여</p> <p>-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p> <p>•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p> <p>※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부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7,236,192원	7,094,206원~8,513,046원	7,094,206원~8,513,046원	7,393,648원~8,872,376원	7,778,024원~9,333,628원	8,162,400원~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8,442,224원	7,094,206원~9,931,887원	7,094,206원~9,931,887원	7,393,648원~10,351,106원	7,778,024원~10,889,232원	8,162,400원~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9,648,256원	8,513,047원~11,350,728원	8,513,047원~11,350,728원	8,872,377원~11,829,835원	9,333,629원~12,444,837원	9,794,880원~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9,931,888원~	9,931,888원~	10,351,107원~	10,889,233원~	11,427,36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근무월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근무월수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근북무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근북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청구하고 이 경우 근북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북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0세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④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p>■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거주자가 우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16세대

구 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정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③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자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액 이상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p>■ 당첨자 선정 방법 [소득 ▶ 거주지역 ▶ 추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구분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p>※ 소득 산정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말소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며, 당첨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p> <p>※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160%이하	~9,648,256원	~11,350,728원	~11,350,728원	~11,829,835원	~12,444,837원	~13,059,838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11,350,729원~	11,350,729원~	11,829,836원~	12,444,838원~	13,059,83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 제외) 단,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나,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나,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할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약자(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차 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선정, 60%를 추첨제로 선정하며,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도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 및 재당첨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본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청약 접수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정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p>※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01.0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일반공급	1순위	2022.01.0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체 견본주택 (정보취약 계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순위	2022.01.05.(수)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다만,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2021.12.24.)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표1> **특별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 내 반드시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안내 (신청자용)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접수 불가(대리인 지정 발급시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유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20.12.24.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 신청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주택신청자와의 관계)
	○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국내거주기간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로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로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로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배우자)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기본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출생관련 일차 확인 필요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신고일 확인)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일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명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 증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일반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액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 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 해당직장 및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써 증빙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소득증빙서류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1.11.(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1.11.(화) ~ 2022.01.20.(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1.1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및 계약체결 일정

구분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계약기간
제출기한	2022.01.12.(수) ~ 2022.01.19.(수) 10:00 ~ 17:00	2022.01.24.(월) ~ 2022.01.28.(금) 10:00 ~ 17:00
대상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사전예약 : 당사 홈페이지 (http://엘리프세종.com) 2022.01.11.(화) ~ 2022.01.19.(수) ※ 예비입주자의 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사전예약 : 당사 홈페이지 (http://엘리프세종.com) 2022.01.21.(금) ~ 2022.01.28.(금)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장소	· 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침산리 84-4, 84-14번지] (※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사기간 내 홈페이지신청 必) ■ 문의전화 : 044-865-0667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별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유의사항

※ **자격확인 구비서류는 상기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비서류 참고하시어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2022.01.12~2022.01.19.)에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아래와 같이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출기한	2022.01.12.(수) ~ 2022.01.19.(수) 10:00 ~ 17:00
제출장소	당사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침산리 84-4, 84-14번지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제출기한	2022.01.24.(월) ~ 2022.01.28.(금), 제출시간 : 10:00 ~ 17:00	당사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침산리 84-4, 84-14번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세대별 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포함)
	○		부동산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금융권 및 우체국 발행 가능)
일반공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복무확인서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계약자)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301-0301-9428-31	계룡건설산업(주)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4.)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규제지역 내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중도금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금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48조의2, 주택법시행령 53조의2, 53조의3, 주택법시행규칙 20조의2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헬스클럽, 공용오피스, 맘스테이션, 작은 도서관, 독서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VII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공사 및 플러스 옵션 등)

1.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 플러스옵션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금액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059.9901A	59A	1,420,000		142,000		1,278,000	
059.9901B	59B	1,280,000		128,000		1,152,000	
059.9901C	59C	1,260,000		126,000		1,134,000	
084.9976A	84A	2,200,000		220,000		1,980,000	
084.9081B	84B	3,030,000		303,000		2,727,000	
084.9846C	84C	1,350,000		135,000		1,215,000	
084.9737D	84D	3,080,000		308,000		2,772,000	
084.9224E	84E	4,290,000		429,000		3,861,000	
084.9849F	84F	2,690,000		269,000		2,421,000	
104.8737A	104A	5,140,000		514,000		4,626,000	
159.8365A	159A	2,840,000		284,000		2,556,000	
159.8365B	159B	2,710,000		271,000		2,439,000	

■ 플러스 옵션 금액

· 가전 선택 품목

① 시스템 에어컨

품목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에어컨	59A, 59B, 59C	옵션1	LG	거실: RNW0520C2SP 침실1: RNW0230C2SP	거실, 침실1	3,200,000		320,000		2,880,000	
		옵션2 (전실)		거실: RNW0520C2SP 침실1: RNW0230C2SP 침실2,3: RNW0160K2SP	거실, 침실1, 침실2(다이닝), 침실3	5,500,000		550,000		4,950,000	
	84A, 84B, 84C, 84D, 84E, 84F	옵션1		거실: RNW0600C2SP 침실1: RNW0320C2SP 주방: RNW0200C2SP	거실, 주방, 침실1	4,600,000		460,000		4,140,000	
		옵션2 (전실)		거실: RNW0600C2SP 침실1: RNW0320C2SP 주방/침실2,3: RNW0200C2SP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200,000		720,000		6,480,000	
	104A	옵션1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주방: RNW0200C2SP	거실, 주방, 침실1	4,900,000		490,000		4,410,000	
		옵션2 (전실)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주방, 침실2,3, 가족실: RNW0200C2SP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가족실	8,400,000		840,000		7,560,000	
	159A, 159B	옵션1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주방: RNW0320C2SP 멀티룸: RNW0160K2SP	거실, 주방, 침실1, 멀티룸	5,600,000		560,000		5,040,000	
		옵션2 (전실)		거실: RNW0720C2SP 침실1: RNW0320C2SP 침실2,4: RNW0200C2SP 침실3: RNW0230C2SP 주방: RNW0320C2SP 멀티룸: RNW0160K2SP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멀티룸	11,200,000		1,120,000		10,080,000	

② 기타 가전 선택 옵션

구분	품목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세탁실 팬트리	104A, 159A, 159B		한샘/LG	불박이장 도장: KCC 위시타워(세탁기/건조기): W16EG	세탁기/건조기/불박이장	5,200,000	520,000	4,680,000
2	키친핏	59A, 59B, 59C		한샘/LG	장식장 PET/PP마감(KCC) 냉장고: BC3K1AA1(G) 김치냉장고: BC3K1AA1(G)	냉장고장/코너장/냉장고, 김치냉장고	6,400,000	640,000	5,760,000
		84A, 84E			장식장 PET/PP마감(KCC) 냉장고: BC4S1AA1(S) 김치냉장고: BC3K1AA1(S)	냉장고장/냉장고, 김치냉장고	7,000,000	700,000	6,300,000
		84B, 84C, 84D, 84F			장식장 PET/PP마감(KCC) 냉장고: BC4S1AA1(S) 김치냉장고: BC3K1AA1(S)	냉장고장/냉장고, 김치냉장고	6,500,000	650,000	5,850,000
		104A, 159A, 159B			장식장 PET/PP마감(KCC) 냉장고: BC4S1AA1(S) 김치냉장고: BC3K1AA1(S)	냉장고장/냉장고, 김치냉장고/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상판콘센트	8,200,000	820,000	7,380,000
3	스마트 복합 환풍기	전타입	공용	힘펠	FHD-P150S1	공용욕실	350,000	35,000	315,000
			부부			부부욕실	350,000	35,000	315,000
4	식기세척기	전타입		LG	DUBJ2GA (59, 84m ²), DUBJ2VA(104, 159m ²)	주방	1,700,000	170,000	1,530,000
5	인덕션	전타입		쿠첸	CIR-B3IH3312FLBI	주방	500,000	50,000	450,000
6	음식물처리기	전타입		보강에스티	QZ-022	주방	700,000	70,000	630,000
7	현관공기 청정시스템	전타입		하츠	EAS-530R	현관	700,000	70,000	630,000

• 가구, 수납, 주방 등 선택 옵션

구분	품목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침실1 슬라이딩도어 불박이장	59A, 59B		리바트	불박이장 PET/PP마감(KCC)	침실1	2,400,000	240,000	2,160,000
		84A, 84C, 84D, 84F 104A, 159A, 159B			불박이장 PET/PP마감(KCC)	침실1	2,700,000	270,000	2,430,000
2	작은방 불박이장	59A, 59B, 59C		리바트	불박이장 PET마감(KCC)	침실3	1,200,000	120,000	1,080,000
		84A, 84B, 84C, 84D, 84E, 84F			불박이장 PET마감(KCC)	침실2	1,700,000	170,000	1,530,000
3	프리미엄다이너닝	59A, 59B, 59C		유니퍼/한샘	슬라이딩 도어 장식장 도장: KCC	슬라이딩도어/프리미엄 장식장	2,500,000	250,000	2,250,000

4	3연동 중문	59A, 59B, 59C, 84A, 84E, 84F, 159A, 159B	유니퍼	3연동 슬라이딩 도어(도장: kcc)	현 관	1,300,000	130,000	1,170,000
		84B, 84C, 84D		3연동 슬라이딩 도어(도장: kcc)		1,100,000	110,000	990,000
		104A		3연동 슬라이딩 도어(도장: kcc)		1,200,000	120,000	1,080,000
5	슬라이딩도어	104A	유니퍼	슬라이딩 도어 (도장: KCC)	가족실	560,000	56,000	504,000
6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59A, 59B, 59C	라이온캠텍	델루나	주방	940,000	94,000	846,000
		84A, 84E		델루나		860,000	86,000	774,000
		84B		델루나		960,000	96,000	864,000
		84C		델루나		580,000	58,000	522,000
		84D		델루나		810,000	81,000	729,000
		84F		델루나		730,000	73,000	657,000
		104A		실비아		660,000	66,000	594,000
		159A, 159B		실비아		2,200,000	220,000	1,980,000
7	거실/주방바닥타일	59A, 59B, 59C	세종통상	CALI120	거실, 주방, 복도	670,000	67,000	603,000
		84A, 84D, 84F				1,100,000	110,000	990,000
		84B				900,000	90,000	81,000
		84C				940,000	94,000	846,000
		84E				1,150,000	115,000	1,035,000
		104A				1,260,000	126,000	1,134,000
		159A, 159B				1,750,000	175,000	1,575,000
8	드레스룸 고급형 시스템가구 간접조명	84A	스페이스맥스	LPM마감	침실1 드레스룸	1,450,000	145,000	1,305,000
		84B				1,350,000	135,000	1,215,000
		84C				1,150,000	115,000	1,035,000
		84D				1,800,000	180,000	1,620,000
		84E				1,950,000	195,000	1,755,000
		84F				1,120,000	112,000	1,008,000
		104A, 159A, 159B				1,000,000	100,000	900,000

• 마감 및 기타 선택 옵션

구분	품목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무기질도료	59A	에스에프코리아	기능성 무기질도료-새벽	침실1, 침실2(다이닝), 침실3, 드레스룸	4,200,000	420,000	3,780,000
		59B, 59C			침실1, 침실2(다이닝), 침실3, 드레스룸	4,800,000	480,000	4,320,000
		84A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5,000,000	500,000	4,500,000
		84B, 104A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5,200,000	520,000	4,680,000
		84C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4,500,000	450,000	4,050,000
		84D, 84F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4,900,000	490,000	4,410,000
		84E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5,300,000	530,000	4,770,000
		159A, 159B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드레스룸1, 드레스룸2	7,800,000	780,000	7,020,000
2	미세먼지 안전복합창	59A	원가드	원가드 복합창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거실	2,000,000	200,000	1,800,000
		59B, 59C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드레스룸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거실	2,200,000	220,000	1,980,000
		84A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드레스룸/팬트리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거실, 주방	4,200,000	420,000	3,780,000
		84D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거실작은창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큰창, 주방			

		84B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거실작은창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큰창, 주방	4,100,000	410,000	3,690,000
		84C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 주방	3,800,000	380,000	3,420,000
		84E			-안전방충망: 침실1,2,3/발코니1,2 /드레스룸/팬트리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 주방	4,500,000	450,000	4,050,000
		84F			-안전방충망: 침실1,2,3/발코니1,2 /드레스룸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 망: 거실	3,700,000	370,000	3,330,000
		104A			-안전방충망: 침실2,3/발코니1,2 /가족실/거실작은창2개소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큰창/주방	4,900,000	490,000	4,410,000
		159A			-안전방충망: 침실2,4/발코니1,2 /다용도실/복층상부복도 /멀티룸/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	5,600,000	560,000	5,040,000
		159B			-안전방충망: 침실2,4/발코니1,2 /다용도실/복층상부복도 /멀티룸/ -안전방충망+롤타입 미세망: 거실	5,700,000	570,000	5,130,000
3	도장마감	104A	벤자민무어	벽: 스카프X / 천장: 울트라스펙	도장: 벽/천장(거실,복도) 간접조명: 거실 월위시조명: 복도	4,900,000	490,000	4,410,000
		159A, 159B	벤자민무어	벽: 스카프X / 천장: 울트라스펙	도장: 벽/천장(거실,복도) 간접조명: 거실 월위시조명: 복도	8,500,000	850,000	7,650,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1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발코니2 이중창),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수 배관노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플러스 옵션 관련 내용

- 폴리싱 타일 또는 포슬레인 타일 시공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광폭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유상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망이 시공되며, 거실 및 주방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추가된 복합창이 설치됩니다.
- 세대현관공기청정시스템(설치장소 : 현관, 소음 발생할 수 있음)의 옵션 선택 시 신발장 내부에 필터가 설치되며, 주기적인 필터교체 등은 입주자가 관리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필터교체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무기질 도료 시공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 침실 및 드레스룸에 시공하며, 최종 마감재 시공전 무기질도포가 시행되므로 육안상 확인 어렵습니다. 이는 최종 마감재 등을 철거 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04A, 159A, 159B 타입의 도장마감 옵션 선택시 무기질 도료 시공 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각 타입별 지정된 색상만 선택가능 합니다.
-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옵션 선택시 각 타입별 색상 및 마감재 사양등이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84B, 84E 타입은 침실1 슬라이딩도어 불박이장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업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금액

구 분	납부시기	금 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농협은행	301-0301-9433-01	계룡건설산업(주)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플러스 옵션 금액

구 분	납부시기	금 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금액의 10%	농협은행	301-0301-9441-71	계룡건설산업(주)
잔금	입주 시	공급금액의 9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씌,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강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강화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센서형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는 기본선택 품목 등은 건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주택형(약식표기)	59A	59B	59C	84A	84B	84C	84D	84E	84F	104A	159A	159B
금 액	22,279,000	23,151,000	23,151,000	30,241,000	30,381,000	30,572,000	30,404,000	31,485,000	30,605,000	38,256,000	57,777,000	57,777,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신청(시공)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정당 계약 기간에만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 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공급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감소분을 공급대금 잔금에서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함문(PVC 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와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를 공제합니다.
※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알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여건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광고홍보물품은 실제 설계의 사실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확한 설계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동측으로 조치원 신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동측으로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며, 방음벽이 설치되어있으나 철도 운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조성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준공시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바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본 단지는 분양주택(660세대)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우수저류조, 단지출입구 등의 시설물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기본주택,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 (특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기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필로티 캐노피 위치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본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정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기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11조)	태양광 발전 설비	적용	전체 조명설비 용량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비율 20% 이상 설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평 메르칼리 진도등급 (MM등급, I~Ⅶ)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ⅦI-0.216g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div> <p>1. 공동주택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2. 신청자 : 계룡건설산업(주) 3.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4. 성능등급 : 가, 소용 전원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 정밀공회계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앙공회계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상원 감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법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권유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권유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 기준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사도반 지하개발 지양</td><td>-</td></tr> <tr><td>3. 도랑사 절성도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연 장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성인인 제품(EPPD)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취급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생활용기동자원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td><td>-</td></tr> <tr><td>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td><td>-</td></tr> <tr><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라. 환경 관련 등급(계속)</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7. 일계열 녹지율 조성</td><td>-</td></tr> <tr><td>18. 자연지반 녹지율</td><td>★</td></tr> <tr><td>19. 생태연계율</td><td>★</td></tr> <tr><td>20. 비오류 조성</td><td>-</td></tr> <tr><td>21. 일대정기 오염물질 기방출 제종의 적용</td><td>★★</td></tr> <tr><td>22. 자연 완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3. 단위계열 완기성능 확보</td><td>★★</td></tr> <tr><td>24. 작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td>★</td></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편의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반·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별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중대부호 종합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랜턴식</td><td>★★★★</td></tr> </table> <p>라.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계엄장비</td><td>★</td></tr> <tr><td>3. 대피장</td><td>★★</td></tr> <tr><td>4. 수평단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td><td>★</td></tr> <tr><td>6. 피난로</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12월 09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부동산원장</p> </div>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정밀공회계 차단성능	★★★★	2. 중앙공회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원 감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수리용이성 권유부분	★	4. 수리용이성 권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사도반 지하개발 지양	-	3. 도랑사 절성도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연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인인 제품(EP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취급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기동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일계열 녹지율 조성	-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태연계율	★	20. 비오류 조성	-	21. 일대정기 오염물질 기방출 제종의 적용	★★	22. 자연 완기성능 확보	★★	23. 단위계열 완기성능 확보	★★	24. 작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편의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반·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별 일조 확보율	★	13. 중대부호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랜턴식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엄장비	★	3. 대피장	★★	4. 수평단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로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h3>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small;">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건축주 : 계룡건설산업(주) 준공(예정)일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12,411.3469㎡ (별가 연면적: 112,055.6546㎡)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번호 : 2021-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12.0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준기준 운영세칙(2020.04.30))</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12월 09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부동산원장</p> </div> <p style="font-size: x-small;">*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건축주 : 계룡건설산업(주) 준공(예정)일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12,411.3469㎡ (별가 연면적: 112,055.6546㎡)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21-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12.0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준기준 운영세칙(2020.04.30))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div>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x-small;">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12056.9542(㎡) 건축물의 부류 번호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번호 : 21-5-08-14-0099 평가자 : 김나연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x-small;">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요구사항</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h>비율</th>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에너지 저소비량</td> <td>1*</td> <td>48</td> <td>38.0</td>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에너지 저소비량</td> <td>1*</td> <td>56</td> <td></td>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에너지 저소비량</td> <td>1*</td> <td>64</td> <td></td> </tr> <tr> <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td> <td>에너지 저소비량</td> <td>1*</td> <td>72</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font-size: x-small;">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1차 에너지소비량(kWh/㎡·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년)</th> </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4.4</td><td>81.4</td><td>62.2</td><td>18.8</td></tr> <tr><td>급탕</td><td>30.7</td><td>38.6</td><td>27.1</td><td>7.5</td></tr> <tr><td>조명</td><td>6.3</td><td>5.1</td><td>14.0</td><td>2.4</td></tr> <tr><td>환기</td><td></td><td>2.9</td><td>7.9</td><td>1.3</td></tr> <tr><td>합계</td><td>81.4</td><td>126.0</td><td>111.2</td><td>28.0</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재목, 가솔, 윤유, 천연, 공업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표준 등에 따른 부응계수를 반영한 값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11월 25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12056.9542(㎡) 건축물의 부류 번호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5-08-14-0099 평가자 : 김나연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사항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48	38.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56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6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4	81.4	62.2	18.8	급탕	30.7	38.6	27.1	7.5	조명	6.3	5.1	14.0	2.4	환기		2.9	7.9	1.3	합계	81.4	126.0	111.2	28.0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정밀공회계 차단성능	★★★★																																																																																																																																																																																																	
2. 중앙공회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원 감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법성	★★																																																																																																																																																																																																	
3. 수리용이성 권유부분	★																																																																																																																																																																																																	
4. 수리용이성 권유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사도반 지하개발 지양	-																																																																																																																																																																																																	
3. 도랑사 절성도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연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인인 제품(EP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취급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생활용기동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7. 일계열 녹지율 조성	-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태연계율	★																																																																																																																																																																																																	
20. 비오류 조성	-																																																																																																																																																																																																	
21. 일대정기 오염물질 기방출 제종의 적용	★★																																																																																																																																																																																																	
22. 자연 완기성능 확보	★★																																																																																																																																																																																																	
23. 단위계열 완기성능 확보	★★																																																																																																																																																																																																	
24. 작용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편의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계획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반·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별 일조 확보율	★																																																																																																																																																																																																	
13. 중대부호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랜턴식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엄장비	★																																																																																																																																																																																																	
3. 대피장	★★																																																																																																																																																																																																	
4. 수평단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로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건축주 : 계룡건설산업(주) 준공(예정)일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12,411.3469㎡ (별가 연면적: 112,055.6546㎡)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21-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12.09.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준기준 운영세칙(2020.04.3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세종시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073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 일원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12056.9542(㎡) 건축물의 부류 번호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5-08-14-0099 평가자 : 김나연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사항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48	38.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56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64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실적	에너지 저소비량	1*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4	81.4	62.2	18.8																																																																																																																																																																																														
급탕	30.7	38.6	27.1	7.5																																																																																																																																																																																														
조명	6.3	5.1	14.0	2.4																																																																																																																																																																																														
환기		2.9	7.9	1.3																																																																																																																																																																																														
합계	81.4	126.0	111.2	28.0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분사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등급 기준	AA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목	1	세대 단자함과 월패드 간 배선 Cat5e 4페어 이상	침입 감지기	
	2	세대 단자함과 월패드 간 22C 배관	차량 통제기	
	3	통신 배관실 (TPS)	전자경비 시스템	
	4	단지 서버실 (MDF)	무인택배 시스템	
	5	가스밸브 제어기	욕실폰 (부부욕실)	
	6	조명제어기	조명제어기	
	7	난방 제어기	일괄소등 제어	
	8	현관 방범 감지기	디지털 도어락	
	9	주동현관 통제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10	원격검침 전송 장치	-	
	11	-	현관도어 카메라	
	12	-	대기전력 차단 장치	

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 되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VAT포함)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36,275,148
			기간이자	313,854
			필요한 경비	1,800,633
			그 밖의 비용	5,873,999
			계	44,263,634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4,319,507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836,831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1,317,10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5,099,578
			부대시설공사	842,653
		계	12,415,669	

			공동가설공사	2,186,677
			가시설물공사	492,002
			지정 및 기초공사	9,402,711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23,437,351
			용접공사	-
			조적공사	1,131,605
			미장공사	951,204
			단열공사	820,004
			방수·방습공사	984,005
			목공사	2,405,345
			가구공사	3,006,681
			금속공사	2,230,411
			지붕 및 환통공사	174,934
			창호공사	863,737
			유리공사	124,094
			타일공사	820,004
			돌공사	776,270
			도장공사	781,737
			도배공사	497,469
			수장공사	147,601
			주방용구공사	3,301,882
			잡공사	131,201
			계	54,666,925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36,041
			급탕설비공사	204,569
			오배수설비공사	448,478
			위생기구설비공사	1,620,815
			난방설비공사	2,014,217
			가스설비공사	590,103
			자동제어설비공사	86,548
			특수설비공사	1,699,496
			공조설비공사	-
		계	6,900,267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6,367,196
			정보통신공사	3,656,590
			소방설비공사	3,847,604
			승강기공사	967,768
		계	14,839,158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656,590
			이윤	14,192,480
			계	17,849,070
	간접비		설계비	1,790,860
			감리비	2,670,904
			일반분양시설 경비	5,585,404
			분담금 및 부담금	5,341,153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42,462,283
		계	57,850,604	
		그 밖의 비용(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6,642,083
		합계		225,427,410

6.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신청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금 액(단위 : 원)	산출근거	
택지비 가산비	기간이자	313,854,82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기타비용(제세공과금)	1,800,633,33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말뚝박기공사비	1,054,241,03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4,819,756,38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합계	7,988,485,574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	1,184,511,44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2,572,756,89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인텔리전트설비	홈네트워크	4,169,682,93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493,242,21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초고속통신	1,541,358,99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기계환기설비	2,809,049,22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2,518,808,767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액 인정	
	법령 조례 재개정 추가비용	256,194,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491,672,43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시공 및 분양보증수수료	604,815,183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합계	16,642,092,066		

7. 분양보증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서북구지구 엘리트세종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관
제 06712021-101-0000800 호	일금 일천오백칠십칠억구천구백일십팔만칠천원정 (₩ 157,799,187,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천정형 에어컨시스템,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④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8. 감리회사, 감리금액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VAT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호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지성설계건설턴트	(주)한빛안전기술단
금액	1,687,508,000원	448,187,273원	292,400,000원

9.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시행	계룡건설 산업(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160111-0003121	대전광역시-주택2003-001
	(주) 대흥	세종특별자치시 대평3길 18, 201호(대평동, 해피라움블루)	164711-0096138	세종-주택-2020-0002
시공	계룡건설 산업(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160111-0003121	대전광역시-주택2003-001

10.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정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택지지구의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게 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의 증감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2021년 11월 25일 사업계획승인 변경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인 2021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 등이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p>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북서측에는 15m 도로, 북동측에는 18m 도로(가감속차로 포함하지 않음), 남동측에는 21m 도로, 남측에는 25m 도로, 그리고 서측에는 도시계획도로 25m예정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소음영향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지구단위지침 등에 따라 웬스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으며 생활타리 등으로 식재됩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부지 남동측으로 업무시설 예정 부지가 있으며, 향후 준공시 소음 먼지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 북동측으로 도시지원시설 예정 부지가 있으며, 향후 준공시 소음 먼지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지 북서측으로 업무시설 예정 부지가 있으며, 향후 준공시 소음 먼지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개발주체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단지는 공원, 업무시설, 지원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냄새, 미관저해 및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묘가 위치하여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주변환경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서쪽에는 '강화최씨휘의경침추공중중 묘'가 위치(110동, 111동, 112동 인근)해 있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p>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사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초등학생은 조치원 신봉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조치원학군에,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배치 됩니다. 학교군은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 방법은 세종시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입학 관련)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320-2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단지 동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생활할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급배기용 DA 등 외부 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 승인 및 분양 후 DA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중 알파룸, 드레스룸 등의 창호 외부공간에 의해 채광, 조망이 불리하고 조경에 의해 일조가 불리한 공간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디자인을 위한 돌출장식물 및 상하부세대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일부 조망 및 채광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소공원이 위치하여 소음 피해 및 생활할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인근 광장에 의해 소음, 먼지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6동 인근에 설치된 공유마당에 의해 소음, 먼지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인근에 설치된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는 105동 남측에 설치됩니다.
<p>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약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조와 관련한 항에 대한 내용은 단지 배치도를 참고 바랍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정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벽체의 경우 길이 및 두께, 재료(RC, 조적, 경량)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되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됩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안테나 설치 예정위치 : 옥상층 105동, 106동, 112동 설치 - 중계기 : 옥상층 105동, 106동, 112동 지하층 헬름2, 헬름7에 설치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과 발코니 축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용 안전매트는 관리사무소 1개소 보관되며, 구간에는 교육 및 관공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12동 2401호 세대 천장에는 159A 상부세대 배관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녹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p>외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마을명 간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동 입면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 • 외벽에 마감재(커튼월록) 및 몰딩이 설치되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최상층 또는 해당 적하부층의 외관 벽체로 인하여 침실의 창에서 일조 조망 등의 지장이 발생합니다. 계약 전 모형 등을 주의 깊게 확인 바랍니다. • 옥상 옹벽파라펫은 구조 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의 돌출 구조물 및 옥탑층 입면 장식벽은 PC, RC 또는 건식 구조로 시공되며, 입면 장식벽은 구조재 보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에 커튼월록이 적용되는 동은 가스입상 배관 및 외부 환기캡 등에 의하여 커튼월록의 입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바깥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및 부속동(경로당 등) 및 일부 공용부(지하 공용창고(없는 경우 제외)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일정기간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조 검토를 통하여 슬라브 두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 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자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가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 990대, 근린생활시설 4대, 총 994대(경차 및 장애인 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 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코어 B1~B2)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 주차장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0개소(급속 5, 완속 15)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위치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동~102동 인근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 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차량에 의해 출입구 차단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부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출입구를 같이 사용합니다.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00mm로 시공됩니다. 각 세대별 층고는 2,900mm 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창호 외부에 옥상 파라펫(수직벽)이 높게 설치되어 조망 및 채광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상하부 세대의 평면이 상이한 경우, 상하부 세대의 돌출로 인하여, 조망, 일조, 빛 또는 소리의 반사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발코니 및 다용도실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흡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실외기실 문이 발코니 방향으로 개폐되어 빨래건조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 개폐시 빨래건조기를 접은 후 사용하기에 바라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위치별 발코니의 천장 마감 및 높이는 직상부층의 설비, 소방, 전기, 통신, 단열재 등으로 인해 천장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세대에 방음, 방한 등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며 손해배상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포입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 기본형 세대 주방 창호 위치는 설치되는 가구 사양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분합창 손잡이는 1개소만 설치가 됩니다.
	가구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체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 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기본 제공되는 냉장고장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빌트인 냉장고와 달리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시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과 디테일은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 공사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체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개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기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벽마감, 거실조명, 수납, 주방공간 옵션 등에 따라 주택형별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벽마감, 거실조명, 수납, 주방공간 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장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어시스템 및 온도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벽마감이 커튼월인 경우에는 가스 입상배관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 우수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외벽마감이 커튼월인 경우에는 가스 입상배관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주택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열원을 사용한 개별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전열교환기,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조명이 설치됩니다.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정,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가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사용품(인테리어 소품기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정,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대지면적

구 분	전체 구역면적	공동주택 부지면적	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면적(m ²)	31,435.90m ²	31,271.68m ²	164.22m ²

10.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침산리 84-4, 84-14번지 (엘리프세종 견본주택) ■ 관람기간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청약 전 사전관람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당첨자에 한해 서류접수 및 계약기간 동안 견본주택 관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사전방문예약 필수) ■ 분양문의 : 044) 865-0667 (10:00~17:00) ■ 홈페이지 : http://엘리프세종.com
<p>견본주택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침산리 84-4, 84-14번지</p> <p>현장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봉산리 379일원</p>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